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'94정기재물조사결과 시·도 공통건의사항인 불용물품의 처분시 활용가능물품중 감정대상 물품금액의 상향조정 과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함.

□ 주요 골자

-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사 물품매입등의 요구 생략조항 삭제
- 불용품처분시 감정의뢰단가 상향조정
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의뢰대상 물품을 활용 가능물품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'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 ' 에서 '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 ' 으로 조정.
-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축소 . . . 소모품 대장 삭제
- 비품의 구분 기준중 취득단가 조정
' 내용년수가 1 년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내용년수가 1 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 만원 이상의 물품 ' 을 ' 취득단가 10. 만원 이상의 물품 ' 으로 조정.

□ 근거 법령 :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동법 제111조

□ 기타참고자료 : 별 첨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4항중 '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'을 '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'으로 한다.

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하며 제2항본문중 '소모품대장'을 삭제한다.

【 별표 1 】 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①비품 ②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